

# 강원특별자치도

## 경고·시정

제 목 휴가, 연가가산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 ○○○○○(前 ○○소방서 ○○○○○) 소방○ ○○○

내 용

###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병가·공가 등의 휴가와 시간외근무 명령 등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지적사항

#### 가.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 사용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8조의2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2020.08.13.)」 ‘제8장 휴가’, ‘다. 공가’,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나)’ 에 따르면 전보시 업무인계인수·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 다음날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방청 소방정책과-2237(2019. 4. 4., 소방직무관련 자격인증 시험 응시관련 복무처리 방안 알림)호에 따르면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등 소방청에서 정책적으로 자격·인증 취득을 추진하는 시험, 소방학교에서 시험을 주관 실시하거나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시험, 현장 소방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인증시험의 경우는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으로 처리하고, 소방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자기개발의 성격이 강한 자격 시험의 경우 연가로 처리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근무지침(2018.7.01.)」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24시간 전일 또는 3교대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교육, 출장 등 공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근 부서의 장은 출동력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위원회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공가를 사용할 경우, 공가 사용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공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출장의 경우 출장 전일(前日)이 24시간 전일(全日) 근무인 경우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거나,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조퇴(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기간(2020. 6.~현재) 동안 ○○소방서 휴가등 복무관리현황을 확인한바 총 3명이 교육입교 등의 사유로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 나. 가족돌봄 특별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2020.10.20.)」 제20조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원·휴교 등의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가족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연간 특별휴가 사용일수(10일 범위), 특별휴가에 따른 급여 유·무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휴가를 사용하고, 무급인 경우 급여에서 사용일 만큼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 ○○○은 00. 0. 00. 미성년 자녀(1명)를 돌보기 위하여 유급 자녀돌봄휴가 2일을 전부 사용하였고,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3일째부터는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총 6시간에 대하여 자녀돌봄 유급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 다. 임신검진 특별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2020.10.20.)」 제20조 제16항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2021.06.30.)」 ‘제8장 휴가’, ‘라. 특별휴가’, ‘(11) 임신검진휴가’, ‘(가)’ 에 따르면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임신검진휴가를 최초 신청시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했어야 했고, 임신검진을 3일 이상 연속하

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했어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 ○○○은 ○○소방서 ○○○○○ 근무 당시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10일간 임신검진휴가를 승인받아 사용하면서 복무관리시스템(e사람)<sup>2)</sup> 근무상황신청 시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소방서 감사기간 동안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사실증명원 및 통원확인서를 확인한 바 임신검진 사실이 없음에도 임신검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 라. 육아시간 중 시간외근무 사용에 관한 사항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2018.07.02.)」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2020.01.20.)」 ‘제8장 휴가’, ‘라. 특별휴가’, ‘(6) 육아시간’, ‘(나)’ 및 ‘(라)’에 따르면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여 사무실에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육아시간을 연가(외출 등)<sup>3)</sup>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시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하여서는 안되고,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여

2)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후 인사관리 일원화하고, 복무관리 통합운영하기 위한 인사혁신처 표준인사 관리시스템(e사람)

3)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333쪽)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VI.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1) 나) (3)

사무실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였어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 ○○○는 ○○소방서 ○○○○○○ 근무 당시 0000. 0. 00. 및 0000. 0. 00.에 육아시간을 승인받아 사용하면서 시간외근무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 마. 연가가산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에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 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2) 연가 일수의 가산’에서는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sup>5)</sup>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한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5)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 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또한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공로연수·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과전·대기발령·연도 중 임용된 신규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 일수를 산정할 때 연가를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 종합감사 대상 기간(2020. 6.~현재) 연가 가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1명이 법정연가일수에 연가미사용 또는 병가미사용을 사유로 연가를 가산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가. 관련자 의견

의견 없음.

###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 ○○○○○ 소방○ ○○○은 0000. 00. 00.부터 0000. 0. 0.까지 ○○소방서에 근무할 당시 0000. 0. 0.(수), 0000. 0. 0.(금)에 임신검진을 사유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소방서 감사기간 동안 진료사실증명원 및 통

원확인서를 확인한 바 임신검진 사실이 없음에도 임신검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 5. 조치할 사항

가. ○○○○○(○○○○○○○○)은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규정에 맞지 않게 공가를 사용하고, 부당하게 휴가종별 입력을 하여 과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492,24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강 원 도

## 주의

제 목 공사 분리발주 등 계약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내 용

###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청사 신·증축,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감사 대상 기간(2020. 6.~현재) 동안 총 195건의 계약업무를 수행하였다.

### 2. 지적사항

#### 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법률 제19031호, 시행 2023. 5. 16.] 제3조, 제35조, 제41조,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

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시행 2023. 1. 1.] 제13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1. 사무관리비(201-01) 라. 피복비’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421호, 시행 2023. 7. 27.]에서는 소방제복의 종류, 착용기간, 착용방법,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소방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소방공무원 피복을 지급할 경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준수하여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 감사 대상 기간(2020. 6.~현재)의 계약집행현황을 확인한 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세출예산에서 집행하기 부적정한 방한장갑을 구입하여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예산편성의 목적과 맞지 않게 집행하였다.

### 나. 공사의 분할계약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316호,

시행 2023. 9. 8.] 제7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시행 2023. 7. 1.] 제1장 ‘제1절 총칙 -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에 따르면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하고, “단일공사”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로 규정되어 있고, ‘5. 분할계약의 금지’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소방행정과-12908(2017. 8. 2.) “소방본부 계약업무 통합운영 계획 알림”에 따라 계약업무의 전문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공사·용역·물품계약의 경우 소방본부 계약부서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 노후청사 개보수’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므로 이를 집행할 경우 “단일공사”로 보아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방본부 계약부서에 계약의뢰 하여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 노후청사 개보수를 계약하면서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소방본부에서 통합계약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제출을 받아 낙찰하한율 87.745%<sup>6)</sup>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 미확인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인지세법」[법률 제19198호, 시행 2023. 1. 1.] 제1조,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1호, 시행 2023. 2. 28.] 제2조의3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sup>7)</sup>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시행 2023. 6. 11.] 제5호 및 [별표 1]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에서는 백만 원 이상 계약체결 시 공사 및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청구액의 2.5%, 물품 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청구액의 1.5%를 강원 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하여야 하고, [별표 2] ‘채권의 매입 면제 대상’에서는 국가기관 등 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관 또는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32호, 시행 2023. 7. 2.] 제14조에 따라 기재금액 1천만 원 이상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6) 낙찰하한율 적용 시 약 2,810천원 예산 절감 가능

7) 세액: 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이하 2만원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만 원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 10억 원 초과 35만 원

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시점에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정보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또는 대금 지급 시 조례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고, 매입의무 면제기관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했는지 확인하여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1천만 원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당시 인지세 납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인지세를 미수납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현황을 확인한 바 총 4건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부적정하였다.

##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가. 관련자 의견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집행을 해야 했으나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정하고 있지 않은 방한장갑을 구매한 점, ○○○○○○○○○ 환경개선 공사 진행 시 단일공사로 보아 분할 하지 아니하고 일괄로 계약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 그리고 계약 진행 시 인지세 및 채권발행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직원 교육 및 부서장 감독을 강화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 소방○ ○○○은 0000.0.00.부터 0000.0.0.까지(1년 7 월) ○○소방서 ○○○○○에서 계약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세출예산에서 집행하기 부적정한 고어텍스 장갑을 구입하여 전직원에게 지급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상기와 같은 행위는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 5. 조치할 사항

### 가.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나. ○○소방서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강 원 도

## 주의·시정

제 목 의용소방대 수당 중복 지급 등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내 용

###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6호, 시행 2021. 6. 9.]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 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 2. 지적사항

#### 가.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시간 미달자 관리 소홀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6호, 시행 2021. 6. 9.] 제4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1호, 시행 2022. 12. 1.] 제6조,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원에게는 기본교육<sup>8)</sup>으로 36시간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원에게는

연간 12시간의 전문교육<sup>9)</sup>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sup>10)</sup>을 연간 24시간을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2]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2년 내에 기본교육을 1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전문교육은 연간 6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해당 대원을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표2]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이수 최소시간

□ 개별 이수교육 시간의 50%이상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

- 신규대원: 임명된 후 2년 이내 기본교육 36시간 → 기간 내 18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
- 기본교육 이수 대원(전담대 제외): 전문교육 연 12시간 → 연간 6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
- 기본교육 이수 전담의용소방대원: 월 2시간 이상(연 24시간) → 연간 12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

자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구성

따라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임기준이 되는 교육이수 최소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해임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3년 까지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한 결과 의용소방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이 해임기준(기본교육 18시간, 전문교육 6시간)에 해당하는 12명 중 10명에 대하여

8) 의용소방대 제도,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수난구조, 산악구조,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전문교육을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 연간 24시간의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교육훈련을 실시

해임하였으나, 2명은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의용소방대원 중 일부가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 및 전문성을 강화할 소정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현장에 참여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의 보조 활동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 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6호, 시행 2021. 6. 9.]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1호, 시행 2022. 12. 1.]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12호, 시행 2023. 8. 4.]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업무 등 제7조11)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1)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교육훈련기록부를 제출받아 교육훈련 여비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소방활동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방활동기록부를 제출받아 의용소방대 활동시간을 확인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했어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의용소방대 ○○○, ○○○, ○○○○의 경우 0000년 00월 00일 정기 교육시간(20:00~22:00)과 동절기 야간근무 시간(20:00~24:00)이 중복되는 등 총 19건 63명의 지급 신청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의용소방대 수당 및 여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예산집행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6호, 시행 2021. 6. 9.]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1호, 시행 2022. 12. 1.]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12호, 시행 2023. 8. 4.]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업무 등 제7조<sup>12)</sup>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법률 제19031호, 시행 2023. 5. 16.] 제3조,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의용소방대지원 경비에 대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규모있게 사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0000년 소집수당 미지급 사항이 확인되어 소집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5]와 같이 한마음체육대회 훈련사항을 교육훈련 여비가 아닌 소집수당으로 지급하여 00월 소집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교육훈련 여비 1,210,000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사항을 소집수당 2,928,200원을 지급함으로써 1,718,200원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그 결과 겨울철 의용소방대 대기근무, 방화순찰, 불조심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축소 실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화재취약시기인 겨울철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확산을 통해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에 지장을 준 사실이 있다.

---

12)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관련자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2년) ○○소방서 ○○○○○에서 의용소방대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 대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규모있게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한마음체육대회 훈련사항을 교육훈련 여비가 아닌 소집수당으로 지급한 결과 12월 소집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겨울철 의용소방대 대기근무, 방화순찰, 불조심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축소 실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화재취약시기인 겨울철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확산을 통해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에 지장을 주었다.

상기와 같은 행위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소집수당과 교육여비를 혼동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①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시간 기준미달 등으로 해임처분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교육 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육여비 및 소집수당 814,6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강 원 도

## 경고·주의·시정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및 조사부 작성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②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③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④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⑤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⑥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내 용

### 1. 개요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3261호, 시행 2022. 12. 30.] 제36조 제3항에 따라 총 131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지적사항

가. 고장 소방용수시설 후속 조치 미흡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기본법」[법률 제19026호, 시행 2023. 5. 16.] 제1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주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98호, 시행 2023. 5. 16.] 제7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04호, 시행 2023. 1. 30.] 제12조, 제13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소방청훈령 제274호, 시행 2023. 1. 1.] 제22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후조치를 하여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고장발생보고를 통해 수리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를 담당부서에서는 대체 소방용수를 지정하여 고장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요구를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즉시 수리하여 항상 가용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후속 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9개소(2021년 2개소, 2022년 4개소, 2023년 3개소)의 고장 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1개소는 고장일로부터 발생보고를 10일 지연하였고, 8개소는 즉시 고장사실 전파 및 대체 소방용수시설을 지정하여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고장발생으로 수리 요청한 소방용수시설의 소방용수조사부를 확인한 결과 ○○○○○호의 경우 0000.00.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중 소화전 제수변이 매몰됨을 발견하여 고장발생 보고가 이루어지는 등 후속 조치는 적절하였으나,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월까지 소방용수조사부에 제수변이 매몰된 특이사항을 작성하지 않는 등 4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 나.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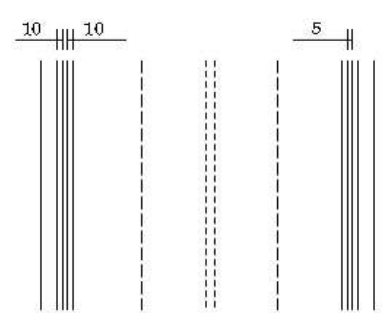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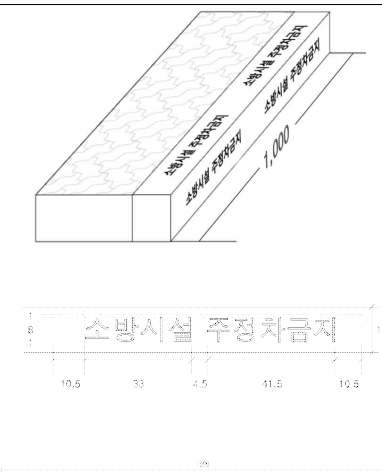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기본법」[법률 제19026호, 시행 2023. 5. 16.]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98호, 시행 2023. 5. 16.]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법률 제19158호, 시행 2023. 7. 4.]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15호, 시행 2023. 7. 4.] 제8조에 따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노면표시는 아래 [표4]와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표4] 소방용수시설 주변 노면표시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16의 3	소방시설 주변 정·주차 금지표시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 •길가장자리구역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연석이 없는 도로구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
516의 4	소방시설 주변 정·주차 금지표시 (연석)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연석에 설치 •연석의 바탕은 적색으로 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생략 가능

자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재구성

그리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04호, 시행 2023. 1. 30.] 제12조, 제13조 및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소방청훈령 제274호, 시행 2023. 1. 1.] 제2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하여야 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시 소방용수시설의 위치·장소·관리실태 및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고, 시·군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관리전환, 표지설치 등 상호 업무협조 사항을 교류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시설의 법령 및 설치기준 개정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소방용수시설(지상식소화전 119개소, 승하강식 소화전 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부적절하게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었음에도 양호로 결과를 보고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관련자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 소방○ ○○○는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1년) ○○소방서 ○○○○○○에서 “○○○○○○호” 소화전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리하던 중 0000. 0. 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시 소화전 스펀들 불량으로 사용 불가함을 인지하여 소화전 고장발생보고 및 대체소화전을 관내 119안전센터에 안내하였으나, 0000년 0월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상기와 같은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10조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처분에 해당한다.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2년 2월) ○○소방서 ○○○○○○○○○○ ○○○○○에서 “○○○○○호” 소화전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리하던 중 0000. 00. 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시 제수변이 매몰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고장발생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나, 0000년 00월부터 00월까지 소방용수조사부에 제수변이 매몰되었음을 작성하지 않았고,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3월) ○○소방서 ○○○○○○○○○○ ○○○○○에서 “○○○○○호” 소화전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리하던 중 전 관리자로부터 인계받은 소화전이 제수변이 매몰되어있는 상태로 지속되다 0000. 0. 0. 소화전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0000년 0월부터 0월까지 소방용수조사부에 제수변이 매몰되었음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2년 4월) ○○소방서 ○○○○○○○○○○에서 “○○○○○호” 소화전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리하던 중 0000. 00. 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시 소화전 보호틀이 파손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고장발생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나, 0000년 00월 소방용수조사부에 보호틀이 파손된 사실을 작성하지 않았고,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1년 5월) ○○소방서 ○○○○○○○○○○에서 “○○○○○호” 소화전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리하던 중 전 관리자로부터 인계받은 소화전이 보호틀이 파손된 상태로 지속되다 0000. 0. 0.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0000년 00월부터 00월까지 소방용수조사부에 보호틀이 파손되었음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2년) ○○소방서 ○○○○○○○○○에서 “○○○○호” 소화전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리하던 중 전 관리자로부터 인계받은 소화전이 0000년 0월에 소화전이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000년 0월부터 0월까지 소방용수조사부에 사용 가능으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은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10조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5. 조치할 사항

### 가.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 소방○ ○○○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나.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다.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 소방○ ○○○을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라. ○○소방서장은

[시정]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 관계부서와  
협의하시어 정비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 주의

제 목 과태료 금액 임의감경 및 사법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②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③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④ ○○소방서 ○○○○○○○○○○○(前 ○○○○○) 소방○ ○○○

## 내 용

###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방관계법령(소방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및 사법처리 업무를 담당하며, 감사대상 기간(2020. 6.~현재) 동안 과태료 14건, 사법 3건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 2. 지적사항

가.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감경 처리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3조, 제5조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준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로 감경하여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sup>13)</sup> 또는 개별법령상<sup>14)</sup>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의견 제출하는 경우, 행정청은 감경 사유를 판단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sup>15)</sup>하여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면서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로 감경하여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미성년자 등 또는 개별법령상의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의견을 제출받아 감경 사유를 판단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하여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했어야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자(시행령 제2조의2 참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14)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감경기준)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106쪽, 법제처 2022 발간)

④ 과태료 감경 제도 (5)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 개별법 상의 과태료 감경사유와의 관계

행정청이 개별 과태료 법령상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존부를 확인하여 개별법 상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도 중복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청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사자가 의견을 통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또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법령상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20. 6.~현재) 동안 당사자에게 과태료 감경 사유의 입증에 관한 의견제출을 받기 전에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100분의 50으로의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 적용 후 부과 및 징수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나.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처분 당사자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sup>16)</sup>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결과를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출자인 관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20. 6.~현재) 동안 확

16)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인한 결과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지연보고 한 ○○○○○○ 외 2개 대상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과태료 부과해야 함에도 관계인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제3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여 과태료 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다.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sup>17)</sup>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을 접수(0000. 00. 00.) 중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sup>18)</sup>가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및 징수했어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질서위반행위의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질서위반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하여 과태료 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라.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사법 처리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68쪽, 법제처 2022 발간)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자연적 행위 개념뿐만 아니라 규범적 행위 개념도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수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 법위반 의사의 단일성과 계속성, 보호법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sup>19)</sup>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전부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벌칙<sup>20)</sup> 및 양벌규정<sup>21)</sup>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소방서에 변경허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벌칙<sup>22)</sup> 및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사법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위반행위자가 법인 또는 자연인인지 확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사법 처리를 했어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

1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20)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60쪽, 법제처 2022 발간)

양벌규정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별법 상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된다. 즉, 형벌은 오로지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인에게도 형벌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자연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것이다.

22)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하지 아니하여 사법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가. 관련자 의견

의견 없음.

####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소방서 ○○○○○에서 건축민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을 접수(0000. 00. 00.) 중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1건으로 일괄 과태료 처분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소방서 ○○○○○○○○○ 소방○ ○○○는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소방서 ○○○○○에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 소방시설법 위반(자체점검 보고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임의 감경 처리하였고, 특히 상기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소방서 ○○○○○○○○○ 소방○ ○○○은 0000. 00. 0.부터 0000. 0. 00.까지 ○○소방서 ○○○○○에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 ○○○○○○, ○○○○○○○의 소방시설법 위반(자체점검 보고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임의 감경 처리하였고, 특히, ○○○○○○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  
고,

○○소방서 ○○○○○○○○○○ 소방○ ○○○는 0000. 0. 00.부터 0000. 0. 00.까  
지 ○○소방서 ○○○○○에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  
○○○○ 건축물의 소방시설법 위반(자체점검 보고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임의 감경 처리하였고, 특히 ○○○○○○○○○○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  
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어 “주의” 처  
분사유에 해당한다.

##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강 원 도

## 주의·시정·개선

제 목 구급증명서 발급업무 등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 ○○○○○(前 ○○소방서 ○○○○○) 소방○ ○○○

②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③ ○○소방서 ○○○○○ 소방○ ○○○

내 용

### 1. 개요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3275호, 시행 2023. 6. 11.] 제37조에 따라 119구급대 등 구급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지적사항

#### 가. 구급증명서 발급업무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70호, 시행 2023. 1. 2.] 제19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sup>23)</su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대에 의한 구

23) 구조·구급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조·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지 서식으로 구급증명서를 신청하면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구조·구급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48호, 시행 2022. 7. 12.]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89호, 시행 2023. 4. 1.] 제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20년 2월 소방본부에서 시달한 “구급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기준 안내”<sup>24)</sup>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772호, 시행 2022. 7. 12.] 제26조 및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에 따르면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은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부결재(전자결재시스템)를 통한 등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구급증명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구급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있는지 신분확인을 하여야 하고, 구급활동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구급증명서를 발급 후 민원처리부에 기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관리 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관련된 기록물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 ①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이하“구조·구급자”라 한다)
  - ② 구조·구급자의 보호자
  - ③ 공동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 24) 방호구조과-4047(2020. 2. 17.)호 「구급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기준 안내」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구급증명서 발급처리와 관련 구급활동정보 시스템의 발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40건의 구급증명서 발급을 처리하면서 12건에 대하여 구급활동정보시스템의 발급 이력이 있었음에도 증명서에 대한 발급기록을 민원처리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구급증명서 발급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관련 서류를 내부결재(전자결재시스템)를 통한 등록 및 관리하며 문서공개 여부를 개인정보 포함으로 “비공개”로 설정하였으나, 열람 범위를 “부서”로 지정하여 부서원 전체에게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등이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나. 119구급대 의약품 관리 소홀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7호, 시행 2022. 1. 20.] 제10조의3,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7호, 시행 2023. 3. 31.] 제7조의2, 제9조에 따르면 소방청장 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 및 항공대를 운용하여야 하며, 119구급차 및 119항공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19호, 시행 2023. 5. 9.] 제7조에 따르면 소방기관별로 보유하여야 할 소방장비 종류 및 수량은 [그림1]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과 같다고 되어 있다.

**[그림1]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구급의약품)[별표 3]**

3. 구급대 장비보유기준					보유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단독장비 (대원별)	공통장비		
					119구급대	119화급대		
구급의약품(04)		의약품(01)	니트로글리세린 (구급용)(01)			1병 또는 알물 10개	1병 또는 알물 10개	
			중합용 기관지 확장제(02)			1병 또는 알물 10개	1병 또는 알물 10개	
			포도당(수액용)(03)	5%				
				10%	2병 이상	각 2병 이상		
				50%				
			생리식염수(수액용)(04)	20ml				
				500ml	2병 이상	각 2병 이상		
			1000ml					
			플라스마솔루션 또는 라트만 용액(05)	500ml	2병 이상	각 2병 이상		
				1000ml				
			비마약성진통제 (진통용)(06)		2알물 또는 팩/척 이상	2알물 또는 팩/척 이상		
			칼슘글루콘염 (혈당저하치료)(07)		2알물 이상	2알물 이상		
			에피네프린 (부신호르몬제)(08)		20알물 이상	20알물 이상		
			아미노아실 (부정맥치료제)(09)		6알물 이상	6알물 이상		
			소모품(02)	포비론 (살균용)(01)	1병 이상	1병 이상		
				클로록시딘 (살균용)(02)	스프레이: 10개 이상	스프레이: 10개 이상		
				에탄올 (살균용)(03)	1병 이상	1병 이상		
생리식염수 (상처세척용)(04)	1병 이상 (알로올용: 10개 이상)	1병 이상 (알로올용: 10개 이상)						
중탕수(열근)(05)	3병	3병						
과산화수소(06)	1병 이상	1병 이상						
자아열소산나트륨(07)	1병 이상	1병 이상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2023개정본)」 Part 2. 운영지침 - I.119구급대 운영지침 - ① 구급대 편성 및 구급장비 운영에 따르면 구급장비 운영담당자는 119구급대 운영에 필요한 구급장비 등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익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구급대별 필요수량을 파악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구급 의약품 및 소모품은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구급대 실정에 맞게 구매를 추진 하도록 되어 있다.

구급대원들은 의약품의 배정, 소모, 유효기간 도래로 폐기한 경우 의약품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배정받은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기간별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은 문서로 보고 후 보건소, 의료기관, 폐기 업체 등을 통하여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약품의 유효기간 도래 전 수량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급장비 보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매했어야 하고,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문서로 보고 후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입하고 보건소 등에 폐기했어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의약품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3]와 같이 ○○구급대의 경우 0000.0.00. “포도당 10% 50ml” 은 0000.0.00.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기하였으나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을 누락하는 등 21건의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표4]와 같이 ○○구급대의 경우 0000.0.00. “에피펜(성인)<sup>25)</sup>” 은 0000.0.00.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기하였으나 특별구급대 구급장비 기준에 따르면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감사일 현재까지 의약품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의약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관련자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 ○○○○○○ 소방○ ○○○은 0000.0.0.부터 0000.0.00.까지(1년 8월) ○○소방서 ○○○○○○에서 구급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구급의약품 등 보유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관할 센터에 의약품 등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적시에 의약품 및 소독제를 보급하여야 함에도 구급의약품 관리대장을 확인한 바 ○○119안전센터에서 니트로글리세린 등[1개 센터 및 1개 지역대에서 7개 약품(○○센터 3개, ○○○○○○ 4개)]에 대해 의약품 보유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소방서 ○○○○○○○○○○ 소방○ ○○○은 0000.0.00.부터 0000.0.0.까지(1년) ○○소방서 ○○○○○○에서 구급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소방장비 분

25) 에피펜: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낙필락시스)의 응급처치

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구급의약품 등 보유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관할 센터에 의약품 등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적시에 의약품 및 소독제를 보급하여야 함에도 구급의약품 관리대장을 확인한 바 ○○119안전센터 ○○○○○에서 벤토린 에보할러 등[2개 지역대에서 1개 약품(○○○○○ 1개) 및 1개 소독제(○○○○○ 1개)]에 대해 의약품 등 보유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9월) 구급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구급의약품 등 보유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관할 센터에 의약품 등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적시에 의약품 및 소독제를 보급하여야 함에도 구급의약품 관리대장을 확인한 바 ○○119안전센터에서 에피펜 등[1개 센터, 2개 지역대에서 2개 약품(○○센터 1개, ○○○○○ 1개) 및 4개 소독제(○○센터 1개, ○○○○○ 2개, ○○○○○ 1개)]에 대해 의약품 등 보유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상기와 같은 행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의약품 등 보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5. 조치할 사항

가. ○○○○○(○○○○○○○○)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최근 3년간 구급증명서 발급 후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범위를 “열람불가”로 변경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라. ○○○○ ○○○○○○은

[개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구급증명서 등록 및 관리 시 개인정보 등이 보호될 수 있게 열람범위를 설정하도록 전 관서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